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02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01일(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면

2.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면

(16시05분 개의)

O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 회 제2차 정례회 제2차예산결산특별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 경안

○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2항,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경제 국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나 예산안 예산총칙과 관련하여 추가설명이 있다 고 하니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추가설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기획경제 국장 오채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 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예산총칙 수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한 예산총칙은 제1조에서 제8조까지로 되어 있으며 간주예산편성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있었으나 보육 교직원 인건비에 해당하는 국도비 지원 사항이 이번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통보돼 보육 교직원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습 니다.

추경예산안 제출 후 지원 결정 통보 된 보육 교직원 인건비는 국비 6억 6천 만 원, 도비 3억 800만 원으로 총 9억 6800만 원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이에 보육 교직원 인건비를 간주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기제출한 예산총칙 규정에 제9조 간주예산 편성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추경예산안 예산총칙에 신설되는 제9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세, 조정교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한다'이상과 같이 제2회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총칙을 수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위원장 김은복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총칙 제9조에 추가요청에 대한 기획경제국장의 설명에 대한 질의가 있 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O김미성 의원 지금 보육 교직원 인건 비로 이제 간주예산을 편성을 하는 건 데 간주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 만 큼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민숙 아동보육과 장님을 이 자리에 출석하는 것을 위원

장님께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뒤에 나와계시군요. 아동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김미성 의원 과장님, 지금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예결 위 위원님들께 공식석상에서 설명을 하 는 자리가 필요할 것습니다.

그래서 간주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안녕하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입니다.

저희 정부지원 시설 보육 교직원 인 건비는 매년 연말이 되면 항상 부족분 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산시같은 경우는 국 공립 어린이집이 계속 확충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9개소, 올해 같은 경 우는 13개소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요구를 했었고 올해도 분기별로 계속 예산 소요액을 파악할 때마다 저희가 돈을 끊임없이 요구를 했었으나 이게 반영이 되지 않다가올 10월에 변경 지원 계획으로, 저희가필요한 돈은 27억인데 16억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이번 정리 추경에 반영을 했었고 그 금액 가지고도 부족 한 상황이어서 어린이집에 안내를 해드 렸는데 어린이집에서 인건비라서 못받 게 되는 성격이니까 민원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복지부에서 예비비를 지

원해준다고 해서 그 예비비를 저희가 사용하게 됐는데 추경예산이 끝난 상태 라 그 돈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예산팀 에 의뢰해서 저희가 간곡히 부탁해서 간주예산처리하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 렸습니다.

왜냐하면 천안시도 간주예산으로 받 는다고 해서 저희도 그렇게 하면 어떨 지 간곡히 부탁한 상황입니다.

O김미성 의원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국비 지급이 늦어져서 인건비가 시급한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간주예산으로 처리한다는 말씀이시죠?

O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맞습니다. O김미성 의원 그부분에 대해서 사전 에 위원님들께 다 동의를 구하셨습니 까?

ㅇ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사전에 17 분 대면 하면서 다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총칙 변경된 부분 에 대해서도 또 위원님들 불편하실까봐 밤에 작업을 하고 나서 그 뒷날 아침 9 시부터 가서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O김미성 의원 어쨌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는 만 큼 또 많은 위원님들도 동의를 해주셨 습니다.인건비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 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해주신 것 같아서 의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만 자리로 돌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기석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 다.

ㅇ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O김미성 의원 이번에 간주예산이 이 제 예산총칙에 9조로 선설되지 않겠습 니까?

그런데 이 예산총칙에 들어가게 되면 9조에 넣었을 때 추경예산안 전체에 해 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 *까*-?

ㅇ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맞습니다. O김미성 의원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 들이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에 대한 시 급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차원에서 동의해 주신 것인 만큼 이 9조가, 이제 간주예산이 적용되는 부분은 앞서 말씀 드린 9억 6800만 원 보육 교직원 인건 비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 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O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위원님 말 씀하신대로 아동보육과에서 위원님들 동의를 받은 그 예산에 대해서만 간주 예산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O김미성 의원 예,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ㅇ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 다.

O김미성 의원 전 이상입니다.

O김은복 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 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O김미영위원과장님지금김미성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에연결되는질의이기는한데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O김미영 의원 지금 이렇게 9조가 신설이 되게 되면 이 항목에는 분명히 '이미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의회에 사후보고한다'라고 명시가 되는데 저희가 그 한 항목에 대해서만는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별도로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오늘 예결특위에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만 현재는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O김미영 위원 이 자리에서 회의록 남겼다고 그게 가능해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O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어차피 예산을 집행하려면 의회에 의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동의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O김미영 의원 지금 9조 신설되는 내용 자체가 별도의 동의가 없이 예산이 승인된 걸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를 한다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ㅇ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0김미영 의원 예.

O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사실은 2019년까지는 이렇게 9조를 넣어서 예산서를 작성을 하고 간주예산도 처리했었는데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간주예산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걸 삭제를 했던 사황입니 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해서 추가로 이렇게 수정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O김미영 의원 문제가 있어서 삭제됐 던 조항을 이번 국비 지급이 늦어져서 그 한 항목을 집행하기 위해 다시 만든 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다 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다른 방법 은……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를 한 것이다, 이렇 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김미영 의원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O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간주예산 처리하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미영 의원 간주예산 처리한다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O김미영 의원 이렇게 9구조가 신설되고 총칙이 다 바뀐다는 말씀은 없으셨 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이제 그 아동보육과에서 위원님들께 간주예산 처리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 저희 도 이제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수정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던 점이 있는데…….

O김미영 의원 어떻게 예산총칙이 바뀌는데 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

았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O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죄송합니다. O김미영 의원 그렇게 했다는 거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 다른 방법적인 부분을 찾아봤냐는 질문 다.

O김미영 의원 아동보육과장님께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인건비 부분이 국비 지급 이 늦어질 때 아동보육과에서는 어떻게 하셨죠?

O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작년같은 경 우도 부족분이 발생해가지고 전액은 다 아니지만 한 10개소 정도의 국공립 어 린이집에 양해를 구해서 인건비를 지급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익년도 1월에 소급 지급한 사항입니다.

O김미영 의원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일단 추경을 통해서 아산시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인건비 지급을 먼저 해야 되 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인건비 지급을 하지 않고 양 해를 구하고 소급지급을 할 수가 있죠, 공공기관에서?

O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라서 국도비 매칭이거든요, 6 대 2.8 대 1.2로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그 금액이 없으면 또 시비만 세울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O김미영 의원 그러면 국비가 늦어지 면 아산시에서는 이 예산을 지급받아야 되는 곳에 양해를 구하고 지급을 미루 는 수밖에는 없는 겁니까?

O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작년에는 그

렇게…….

입니다.

O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저희가 이제 뭐 예비비 이런 성격으로 해서 일정 부 분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었을지는 모 르겠으나 작년에는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O김미영 의원 검토는 되지 않았던 상 황인 거지 않습니까?

O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저희가 예산 팀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O김미영 의원 말씀을 드렸는데요?

ㅇ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근데 잘 진행 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김미영 의원 잘 진행이 되지 않았다 는 게 무슨 말인가요?

ㅇ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저희가 예산 이 부족해서 예비비 이런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진행이 되지 않았고 어차 피 저희는 예비비를 받는 거보다 국도 비를 받아서 국도비를 이용하는 것이 우리 아산시에도 재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O김미영 의원 과장님 지금 행정은 아 산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시민을 향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시민이 희생이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도록 일 이 진행이되는 겁니까?

ㅇ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죄송합니다. O김미영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O위원장 김은복 예, 전남수 위원님.

O전남수 의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우리 국장님 지금 의회는 이런 부분 에 대해서 서운함을 좀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책자에 보면, 유인물에 보면 예 산총칙 수정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총칙이있죠?

O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O전남수 의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내용같아 요.

총칙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이 안 됐 어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내용이 틀린 내용이지 않습니까, 수정안과?

O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원안하고 다 대해서 저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르죠.

O전남수 의원 그렇죠?

O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론적으로 모든 이 최종 추경 예산안이 끝난 이후에 이 내용과 회계연도 중에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이 내용이, 예산총칙 내용이 예산총칙 수정안으로 바뀌어야만 지금의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 이런 거죠?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O전남수 의원 그래서 이 총칙 수정안 을 긴급하게 제출하신는 거죠?

ㅇ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O전남수 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 김미성 위원님이 오늘 아침에 운영위원

전화상으로, 구두상으로, 만나서 전달했 을 때 이런 정확한 부분에서 설명이 전 달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전에 전달이 되면 예산총 칙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이런 총칙 수정안을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 에서 우리가 간주예산으로 처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설명이 있어야 하 지 않았었느냐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 는데 본 의원이 얘기가 틀렸나요?

O기획경제국장 오채환 간주예산 처 리에 대해서 과정은 아동보육과에서 위 원님들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 에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그 과 정에서 이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 한 설명이 안 됐다고 하면 그 부분에

O전남수 의원 아동보육과장님과 기획 예산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의회에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O전남수 의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 좀 잘 전달을 했어야 이런 사태가 벌어 나지 않는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 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알겠습니 다.

O전남수 의원 이상입니다.

O**이기애 위위** 저 한 가지만 드리겠습 니다.

이 예산총칙에 대해서 어쨌든 제9조 에 간주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는 해서 우리 의회의 17명의 위원들에게 회 통해서 긴급현안 질의를 하시겠다라 고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2차 본회의 때 제가 봤을 때는 긴급현안 질의로 국장님하고 말씀을 할 것 같아서 더 길게 얘기하면 또 이게 회의가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대에서 제9조를 뺐었던 이유는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일이에요.

간주예산 같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예산은 돌아가야 되는데 이건 뭔가 편법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 니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아동보육과 같은 경우에도 국 공립을 확대한다고 해놓고서, 정부에서 도 국공립을 확대하려고 하는 거 아니 겠습니까?

확대는 시켜놓고 예산은 안 내려 보내는 이런 형식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운영비는 안 주고 지금 급하 니까 인건비만 주겠다, 애들 사탕물림 을, 막대사탕을 하나 물린 것뿐이에요.

저는 이게 심화된 상태로 이렇게 올 라오는 것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분명히 와서 설명은 제대 로 했어요, 간주예산에 대한.

그러면 일년동안 열심히 일한 분들이 인건비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하냐 이래 서 저도 찬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자 부서마다 제 역할을 못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지금 아동보육과과장님께서는 보육에 대한, 간주예산에 대한 설명만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기획에서는 이 책 자, 이번에 올라온 예산총칙 자체가 변 경되는 사항이에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뜯어 봤어요. 뜯어봤는데 제 책자에 아주 그 냥 딱 붙어있어요, 풀로.

근데 어떻게 내 방에 와가지고 책자를, 예산총칙을 전면수정하면서 어떻게 의원한테 얘기 한마디도 없이 변경을 한다, 수정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하고도 나눠서 17분한테 다 설명을 했었어야 맞다. 제 역할에 충실했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본 의원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제 역할에 충실히 해주 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O위원장 김은복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국공립 인건비는 해마다 지금 인건비가 지원이 12월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과장님 잠깐 답변해주세요.

해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차입금을 넣던지 선생 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다음 달에 주 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어디 회사에서 월급을 이렇게 지급을 안 합니까?

이건 아산시에서 대책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과장님 대책을 세우셔서 방안을 모색해셔서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더 이상 질의가 없 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 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총칙 제9조 설명내용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예산총칙 제9조를 추가하여 수정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김미성 의원 김미성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

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 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안 예 산총칙 중 '제9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에는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세, 조정 교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 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O김은복 의원 김미성 위원님을으로부 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 워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미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김미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예산총칙 제9조 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필에 따 라 예산편성 주관 부서인 기획예산과와 과장에게 듣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 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6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6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기획행정·문화환 경·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 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O전남수 의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좀 다 뤘는데 농정과에 저희가 육묘장 사업 1 억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장님도 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고 이춘호 위원님도 계시고, 그 지역

구에 우리 이기애 위원님도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농정과 장님께서 조금 전에 오셔서 이춘호 위 원님과 또 이렇게 자리를 하면서 그 얘 기를 들었을 때 이 부분을 좀 심도있게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할 필요 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일부에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 는 도의원 사업비로 된 게 아니냐고 생 각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 도에 대한 정책사업비이기 때문에 공모로 이렇게 남은 금액을 받은 걸로 해서 내년 사업 에 올해 좀 빨리 받은 사업이라고 설명 을 들었고요.

>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본 의원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위원님 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드려봅니 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O위원장 김은복 이춘호 위원님.

O이춘호 의원 위원들 간에 원만한 협 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 니다.

O위원장 김은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예산안 조 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 과는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 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여 바로 표 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 ㅇ출석 공무원 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 아동보육과장 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은 일반회계에서 7건. 1억 4600원을 삭 감하고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 안 조정하였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 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6차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 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월요일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이기애 박효진 윤원준 김미성 김미영 전남수 이춘호 김은복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전문위원 한기영 주 무 관 박영선

오채환 기획경제국장 이기석 김민숙

○출석 위원(8인)